

2026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(희망)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기업 모집공고

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(희망)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9. 1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목적

-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(예정)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침해·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 및 자격
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- (지원자격)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*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* 아마존, 이베이, 타오바오, 티몰, 징둥닷컴, 틱톡샵, 쇼피, 라자다, 샤오홍슈, 쿠팡, 토코피디아, 라쿠텐 등

□ 지원규모 및 내용

- (지원규모) 총 120개社 선정(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업 모집)
* 미국 40개社, 중국 30개社, 일본 30개社, 유럽·동남아 20개社

- (지원내용)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진단, 컨설팅, 해외 권리화 및 브랜드 성장 등 지원

해외 권리화 지원 관련 참고사항	상표·디자인은 1국가·1표장·1상품류를 1건 으로 취급하며, 기업당 3건 이내 해외 상표·디자인 출원 진행 예시1) 1개 국가+1개 상표+1개 지정상품류 = 1건 예시2) 1개 국가+1개 상표+3개 지정상품류 = 3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온라인 플랫폼 진출(희망)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내용 >

전문가 사전진단	출원전략 컨설팅	해외 상표·디자인 출원	브랜드 성장지원
• 등록가능성 검토 • 현지화 상표·디자인구성 및 선등록상표·디자인 등 검토	• 기업 맞춤형 상표·디자인 출원 전략 제언 •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	• 국가별 맞춤 상표·디자인 출원 • 출원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	•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사후관리 •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

3.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'26. 9. 1.(화) ~ '26. 9. 15.(화) 17:00 마감
- (신청경로)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홈페이지(회원가입 필요)를 통한 온라인 지원(www.ip-navi.or.kr/ipcenter)
 - * 기업별로 국가(권역)당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, 동일 기업의 복수 국가(권역)에 대한 중복신청 가능

<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>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	별도 양식 [붙임1] , 사이트 내 신청페이지에서 입력
2	침해 증빙자료	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·유통 증빙 등 [붙임2]
3	수출 증빙자료	수출증명서 등 [붙임2]
4	기업규모확인서	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
5	사업자등록증(명원)	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
6	국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
7	지방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
8	제3자 부당개입 배제 협약서	별도 양식,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[붙임3]

□ 기업선정

- (선정심사) 서면심사를 통한 기업 역량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
 -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실시 **[붙임4]**
 - * 9. 21.(월) ~ 9. 22.(화) 양일간 국가(권역)별 선정심사 예정
- (선정기준) 심사항목을 종합하여 득점 상위기업 선정
 - * 각 국가(권역)별 선정기업(수)은 아래와 같음

국가	미국	중국	일본	유럽·동남아
선정기업	40개社	30개社	30개社	20개社

- (결과안내) 신청기업 메일로 개별 통지

4. 모집절차 및 과업 일정

기업모집	•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
선정심사	• 지원기업 서면평가(내·외부위원 참여)
선정결과 통보	• 선정/불선정 기업 개별 통지
보호원-지원기업 협약 체결	• 선정결과에 따른 보호원-지원기업 협약 체결 - 협약방식: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 - 지원비율: 정부지원 80%, 기업 현물부담 20% - 협약시 제출서류: 현물출자확인서,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, 현물출자인력의 재직증명서
과업 진행	• 사전진단, 출원전략 컨설팅 • 권리화 지원 • 브랜드 성장지원
과업 완료	• 국가별 최종보고서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5. 유의사항

○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음

- ※ 휴·폐업 기업,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
- ※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(허위 서류 작성, 선정 약속, 부정청탁, 기관 사칭 등)이 확인된 경우
- ※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,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선정기업은 선정 후 관련 지침 및 안내에 따라 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-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

- 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, 손해배상 청구,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 필요한 조치 및 고발·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국회·감사원·지식재산처·변리사징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
- ※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6. 문의처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☎ 02-6207-4079
- globalplatform@koipa.re.kr

[붙임1]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(희망)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

[붙임2] 제출서류 안내

[붙임3]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협약서

[붙임4] 지원기업 심사항목 및 선정심사표